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환중개회사(법 제9조, 영 제18조~제20조)

1.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1) 의의(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20조)

법 제9조 제1항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 ②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영 18조 5항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영 제20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 ① 외국환중개회사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는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5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 ②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중 2가지

 제2-41조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업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증권
2. 환매조건부매매
3.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인가신청(영 제18조 제1항)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명칭
- ②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 ③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에 관한 사항

(3) 인가요건(영 제18조 제2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 납입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일 것

- 나.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을 갖추는 것
- 다.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는 것
- 라.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

- 가.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것
-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추는 것

(4) 인가 결정(영 제18조 제7항)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변경 또는 폐지 신고(영 제18조 제8항)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환중개회사의 상대방

(1) 의의(법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범위(영 제18조 제4항)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① 한국은행
- ②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4조 제1호 및 제2호¹⁾의 기관

1) 은행, 종합금융회사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
금융회사 [2023.7.4. 개정]
- 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⑥ 외국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
관인 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3. 기타 업무의 인가

(1) 의의 (법 제9조 제3항)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합병 또는 해산
-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

(3) 인가 신청 (영 제18조 제6항)

⑥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4. 보증금 예탁

(1) 의의 (법 제9조 제4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예탁금의 범위 (영 제18조 제9항)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하는 조치
2. 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조치

5. 보증금의 반환 (영 제18조 제10항)

⑩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5.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1) 의의** (법 제9조 제5항, 영 제19조 제1항)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업무 방법 (영 제19조 제2항)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①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 ②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